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86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박성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보경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2023. 1. 15.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1. 10. 접수 제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D과 피고 C 사이에 2022. 7. 18.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7. 22. 접수 제134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1. 12. 7.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F(이하 F)로 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의 F에 대한 E약정에 따른 광고료납부 및 손해배상을 보험가입금액 3억 원, 계약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지급보장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같은 날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23. 3. 16. F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5,783,68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와 D을 상대로 위 돈에서 사전구상금 52,351,853원을 제한 나머지 구상금 153,431,82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8759)를 제기하여 2023. 9. 20.

‘소외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188,478원과 그중 153,431,828원에 대하여 2023. 4. 16.부터 2023. 7. 20.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의 피고 C에 대한 처분행위

D은 2022. 7. 18.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7. 22. 접수 제134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인 2022. 7. 18. 기준 D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번호	목록	금액(단위: 원)
적극 재산	1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10,384,200
	2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48,495,300
	3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택	69,569,280
	4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호	519,000,000
	5	안산시 상록구 I 대 80㎡	101,600,000
	6	강원 횡성군 J 임야 24992㎡	37,488,000
		합계	786,536,780
소극 재산	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채권자: K조합)	42,300,000
	2	고양시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채권자: F)	325,523,869
	3	L카드(불합)합부영업된 채무	17,323,000

4	M보험서울<본>채무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25,000,000
5	M보험서울<본>채무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20,000,000
6	N은행 O금융센터 채무	30,000,000
7	P조합(지역)고양Q 채무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18,000,000
8	N은행 본부총괄 채무	73,000,000
9	피고 C에 대한 채무	24,000,000
	합계	575,146,86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1, 2, 이 법원의 R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채무 300,000,000원을 포함하여 소극재산이 875,146,869원으로, 적극재산 786,536,000원으로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아 이뤄진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보험가입금액인 300,000,000원만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3. 3. 16. F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5,783,681원을 지급함에 따라 비로소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한편 이에 따라 위 표의 소극재산 2항의 F의 채무액 중 그만큼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달리 D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별지